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정기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44 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다음 각 호의 응시연
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 전산직렬의 대상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별표 12 가목 사회복지란 다음에 전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별표 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 별표 12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공무원----- ----- -----.</p>
<p>제2조(적용범위) <u>공무원</u>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u>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u>(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p>
<p>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① (생략)</p>	<p>제5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8조(응시 결격사유) ① 「<u>지방공무원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②·③ (생략)</p>	<p>제8조(응시 결격사유) ① <u>법</u>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u>자</u>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u> 해당하여야</p>	<p>제9조(응시연령) ----- ----- <u>사람은</u> ----- ----- <u>18세</u> ----- ----- <u>이상이어야</u> -----</p>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삭 제>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렬	직류			
항공	일반항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	지적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	위생		위생사	위생사	위생사
	사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